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개편 등〉

■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40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총괄	3
가. 입법배경: 방송분야 거버넌스 변화 경과	3
나.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 대두	8
다. 해외의 방송·통신 관련 기구 현황	11
2. 방송 분야 소관의 일원화(안 제11조 및 제12조)	13
3.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운영방식의 변화 등(안 제4조 등)	21
4. 부칙	3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민회의원 등 16인

나. 발 의 일 : 2025. 4. 25.

다. 회 부 일 : 2025. 4.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사무 중 방송·통신의 융합·진흥을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해당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에 유료방송정책을 포함하고, 심의·의결 사항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등록에 관한 사항, 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사항, 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방송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총괄하도록 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

아울러 업무 범위가 늘어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을 9명으로 확대하여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6명은 국회가 추천하되 비교섭단체까지 포함하는 야당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등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합의 과정을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하고자 함. 아울러 상임위원을 중

전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여 의결사항 후속조치 등 일상업무의 집중도를 높여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총괄

가. 입법배경: 방송분야 거버넌스 변화 경과

- 현재 방송부문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각각 주요 역할을 수행하며 이원화된 거버넌스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방통위는 지상파·라디오 방송 및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PP 등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며,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및 ICT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 방송과 관련해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과 관련한 사항을 담당함.
- 주파수 업무 또한 방송용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통신용 주파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분담하고 있음.
-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주무부처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의 목적이었음.¹⁾
- 2000년대 IPTV나 DMB 등장 등 신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1) 舊「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67호, 2008.2.29,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현으로 방송과 통신으로 분리되었던 콘텐츠, 네트워크, 단말기 및 서비스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이었으나,

- 방송·통신은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나뉘진 거버넌스 체계 하에서, 서로 다른 정책이념과 규제논리로 인해 유사한 서비스에 각기 다른 규제체계가 적용되는 **규제 형평성 문제**나 하나의 서비스에 방송과 통신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중복 규제의 문제**, IPTV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도입 지연 문제** 등 여러 한계점이 노출되었으며,
- 이에 따라, 방송·통신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기능을 통합기구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²⁾
- 국회는 2007년 1월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부처·기구 개편방안과 IPTV 도입 관련 법률안 등을 논의했으며, 2008년 2월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방송·통신의 내용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를 민간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³⁾

2) 국회방송통신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제출) 검토보고서”, 2007.5.

3) 당시 ‘제정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음.

○ 방송과 통신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하는 형태는 2013년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규제 중심으로 조정하고, 방송통신 진흥 및 융합 등의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는 식으로 기능분담이 되어, 현행 체계로 이어지고 있음.

- 당시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인수위원회는 기능 개편 원칙으로서 방송통신 분야를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으로 구분하되, 방송통신 융합의 급속한 진전으로 진흥과 규제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진흥의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고,⁴⁾ 미래창조과학부 내 정보통신기술전담차관을 두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 및 융합 등의 기능을 이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기능을 전담하는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변경하려 하였음.

- 이에 맞춰 이한구의원 등 15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① 통신·전파·네트워크·융합정책, ② 방송진흥정책, ③ 방송매체정책, ④ 이용자 보호정책 중 ▲통신·전파·네트워크·융합정책 전체, ▲방송진흥정책 중 광고정책, 미디어랩허가, 편성정책 등 일부 업무, ▲방송매체정책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는 한편, 방송·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4) 1차 발표(2013. 1. 15), 2차 발표(2013. 1. 22)

중 유료방송 허가, 홈쇼핑 승인, 채널구성과 운영 등을 선별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이용자 보호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⁵⁾

- 이에 대해서는 방송 및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방송정책을 방통위에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었고, 여야 정부조직개편 합의⁶⁾에 따라 현재와 같이 IPTV, 종합유선방송,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사항은 미래부로 이관하되, 허가·재허가하는 경우 등에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는 식으로 이원화 되었음.

< 방송통신위원회 존치 및 미래부 이관 사항 합의내용(2013.3) >

구 분	방송통신위원회 존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방송통신융합 정책실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통신진흥정책, 융합정책총괄 융합정책, 방송통신녹색기술, 전파정책 기획, 전파방송관리, 주파수정책, 디지털방송정책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	뉴미디어정책 ※비보도·상업PP 등록·승인사항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 통신경쟁정책, 통신이용제도, 통신자원정책
이용자보호국	조사기획총괄, 통신시장조사, 방송시장조사, 이용자보호, 시청자권익증진	
네트워크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	네트워크기획, 네트워크정보보호, 인터넷정책, 지능통신망
산하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5)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3.2.

6) 연합뉴스, “여야 정부조직개편 관련 합의사항 전문”, 2013.3.17.(<https://www.yna.co.kr/view/AKR20130317063500001>)

- 2013년의 기능분화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이후 방송 관련 이슈에 밀려 상대적으로 ICT와 통신 분야에서의 정책성과가 미흡하고, ICT 관련 정부기능(과거 ‘정보통신부’의 기능)이 각 부처로 분산됨에 따라 정책의 통합성과 추진력이 떨어져 ICT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었음.
- 이에 따라 ICT와의 연관성이 크고, 방송·통신 융합이 보다 진전된 매체라고 볼 수 있는 IPTV나 SO, 위성TV 등의 뉴미디어 관련 사항이 미래부로 이관되었고,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산업성 보다는 공공성의 가치가 보다 중요시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합의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두었다고 볼 수 있음.
-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 ICT, 방송부문 주무 부처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⁷⁾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 ICT, 방송 부문 주무 부처 변화>

개편시기	김대중-노무현 정부 1998년	이명박 정부 2008년	박근혜 정부 2013년
과학기술 부문	과학기술부 (전신: 과학기술처)	교육과학기술부 (전신: 교육인적자원부 + 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 (전신: 교육과학기술부 일부 + 방송통신위원회 일부)
ICT 부문	정보통신부 (전신: 체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전신: 정보통신부 + 방송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전신: 방송통신위원회 일부)
방송 부문	방송위원회 (1981년 발족)		

자료: 김수원&김성철, “새 정부의 ICT·미디어 관련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연구”, 2017.

7) 문재인 정부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그 역할 분담은 박근혜 정부와 동일, 윤석열 정부 경우에도 역할 및 기능의 변경은 없었음.

나.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 대두

- 방송매체별로 규제체계가 이원화되고 미디어 진흥기구와 규제 기구가 분산됨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서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IPTV, OTT 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기존의 분리된 규제체계로는 효율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이와 같은 담론은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가령 2003년에서 2004년에는 데이터방송(T-Commerce) 및 DMB, 2007년에서 2008년에는 IPTV, 2013년에는 VOD, 2016년에는 OTT 서비스 등 ‘경계영역’에 존재하는 서비스의 등장은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된 현재의 규범체계 및 거버넌스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음.
- 특히 최근 OTT서비스의 급속한 확산과 미디어 소비 패턴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방송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제고함.
- 케이블TV와 IPTV가 경쟁하는 유료방송시장에서 OTT가 등장하게 되면서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OTT 주도로 미디어 환경이 재편되면서 기존 방송사업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음.

- 실제 2024회계연도 방송사업매출은 IPTV,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CP)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감소하여 전년 대비 0.9% 감소하였고, 지상파방송사업자, SO, 위성방송사업자는 10년간 연평균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여, 2015년 대비 2024년 매출이 축소된 역성장을 보이고 있음.

< 매체별 방송사업매출 현황('15년~'24년) >

(단위 :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전년 대비		연평균 성장률
											증감액	증감률	
지상파	41,007	39,987	36,837	37,965	35,168	35,665	39,882	41,551	37,309	35,308	△2,001	△5.4%	△1.6%
SO	22,590	21,692	21,307	20,898	20,227	19,328	18,542	18,037	17,335	16,835	△500	△2.9%	△3.2%
위성	5,496	5,656	5,754	5,551	5,485	5,328	5,210	5,058	4,920	4,742	△178	△3.6%	△1.6%
IPTV	19,088	24,277	29,251	34,358	38,566	42,836	46,368	48,945	50,072	50,783	711	1.4%	9.7%
PP	62,224	63,801	66,396	68,402	70,849	70,725	75,405	76,268	71,087	71,081	△6	△0.01%	1.5%
CP	2,655	3,482	5,442	5,761	6,311	6,148	8,563	9,230	8,980	9,263	283	3.2%	13.0%
지상파DMB	108	103	114	104	95	76	49	48	31	30	△1	△3.2%	△133%
계	153,168	158,998	165,102	173,039	176,702	180,106	194,019	199,137	189,734	188,042	△1,692	△0.9%	2.3%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24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2025.6.

- 방송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미디어 관련 정책은 현재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공정위 등 4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다고 평가하며, 다원화되어 있는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로 인해 효율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⁸⁾

<미디어 관련 정부부처 주요 업무>

부처	주요 업무
과기정통부	유료방송/홈쇼핑 인허가, 통신 인허가, 전파 관리, 디지털 미디어 진흥, 인공지능, 데이터 정책
방통위	지상파/종편 인허가, 방송편성/다양성, 방송광고, 방송/통신 사후규제, 인터넷/플랫폼 정책, 외주제작, 이용자보호/단말기 유통조사, 디지털 유해정보
문체부	문화산업정책, 광고 진흥, 영상물 심의, 한류지원, 저작권 관리, 게임, 독립제작사 지원, 출판
공정위	유료방송 M&A, 방송/통신 사후규제, 플랫폼 정책, OTT M&A

자료: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방송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바람직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향”, 한국방송학회&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정책세미나, 2022.3.

- 이에 제21대 대선 당시 양당의 대선공약에 관련 사항이 포함되기도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21대 대선 양당의 미디어 거버넌스 관련 공약>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 분산되어 있는 방송영상 미디어 관련 거버넌스 및 법제의 통합 개선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와 거버넌스 논의 위한 ‘미디어 혁신 범국민 협의체(가칭)’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와 전문역량 강화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전면 개정	○ OTT와 방송을 아울러 고려하는 방송미디어 법제 개선 - 여론형성 등 공적영역을 담당하는 방송, 시장영역에서 국내외 경쟁을 하는 방송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송미디어 법제 마련 ○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 정비 - 허가 등 규제·심의 및 진흥 등에 대한 소관 기관 명확화, 중복 규제 해소

8)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방송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바람직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향”, 한국방송학회&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정책세미나, 2022.3.

다. 해외의 방송·통신 관련 기구 현황⁹⁾

- 해외의 방송·통신기구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일본은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기능을 단일기구에서 담당하나,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정책과 규제기능을 분리하여 정부 부처와 위원회가 각각 분담하는 등 역사적·문화적·정치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¹⁰⁾
-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1934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방송(라디오, TV), 통신(유무선, 위성 등) 그리고 일부 인터넷 관련 규제까지 단일기구로 총괄하고 있으며, 독립합의제 위원회로 운영됨.
- 일본은 총무성이 방송과 통신정책 및 규제기능을 통합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OTT 등 신규 서비스의 경우에는 법령 미비 등으로 명확한 규제 기구가 존재하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총무성이 총괄관리하는 체계가 유지되고 있음.
- 영국은 방송통신 정책은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와 커뮤니케이션청(Ofcom)이 분담하며, DCMS는 주로 정책결정과 산업 지원 등을 수행하고, Ofcom은 주로 규제기능(라이

9) 「방송통신 거버넌스 체계의 합리화 방안 연구」(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연구용역, 2018.12.), 「4차 산업혁명 시대 해외 주요국 방송·통신 핵심 정책의제 및 정책 추진체계 분석을 통한 정부혁신 방안 연구」(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연구용역, 2019.12.) 등을 참고하여 작성.

10)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기능이 정부부처와 위원회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정책기관 분리·규제기관 통합형(영국, 캐나다), 정책기관 분리·규제기관 분리형(프랑스), 정책기관 통합·규제기관 통합형(이탈리아, 호주) 등 하위 유형은 다양하게 존재함.

선스, 시장경쟁, 콘텐츠 심의 등)을 담당함.

- 캐나다는 CRTC(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라는 연방규제기구가 규제기능을 담당하고 정책기능은 정부 부처가 관장하는 분리운영체제임.

< 주요 국가의 방송·통신기구 현황 >

유형	국가	구분	정책/진흥기관	규 제 기 관
기능통합형	미국 (위원회)	방송	연방통신위원회(FCC)	연방통신위원회(FCC)
		통신		
	일본 (독임제)	방송	총무성	총무성
		통신		
기능분리형	호주	방송	인프라·교통·지역개발· 통신·예술부(DITRDCSA)	통신미디어청(ACMA)
		통신		
	이탈리아	방송	기업·제조산업부 (MIMIT)	통신규제위원회 (AGCOM)
		통신		
	영국	방송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DCMS)	통신청(Ofcom)
		통신		
	캐나다	방송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 문화유산부	라디오·텔레비전통신위원회 (CRTC)
		통신		

2. 방송 분야 소관의 일원화(안 제11조 및 제12조)

가. 주요 내용

- 안 제11조제1항제1호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에 “유료방송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현재 과기정통부가 관장하고 있는 유료방송정책 사항을 이관하고 있음.¹¹⁾
- 현재 유료방송과 관련된 허가·승인·등록 등은 과기정통부가 소관하고 있는데, 안 제11조의 소관사항 조정에 맞추어 안 제12조는 유료방송 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을 방통위가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u>방송채널정책</u> 에 관한 사항 2. ~ 4. (생략) ② (생략)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 -----. 1. ----- ----- <u>방송채널정책, 유료방송정책</u> -----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 -----.

11) 동 개정안과 연계된 최민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81호)에서는 과기정통부 소관 사항 중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관련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소관을 변경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u>	7. <u>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등록</u> -----
8. <u>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u>	8. ----- ----- <u>허가</u> -----
<u><신설></u>	<u>8의2. 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u>
9. (생략)	9. (현행과 같음)
<u><신설></u>	<u>9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등록에 관한 사항</u>
10. ~ 29. (생략)	10. ~ 29. (현행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현재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방송이나 통신의 공공성 등에 중점을 두어 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독임제 기구인 과기정통부가 산업성에 초점을 맞춰 유료방송의 진흥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고 있음.

- 개정안은 방통위에 ‘방송·통신의 융합·진흥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방송·통신과 관련된 규제와 진흥을 방통위가 모두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당 분야만 고려할 때 현재 방송매체별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담당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항은 모두 방통위가 담당하게 됨.

<방송매체별 소관 구분>

구분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	- 지상파방송사업자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과기정통부 기술심사-방통위 허가	- 위성·종합유선·중계유선 방송사업자 - IPTV 사업자
승인	보도·종편 PP	홈쇼핑 PP
등록	-	- 일반 PP - 기타 사업자 (전송망·음악유선·전광판 방송사업자)

- 현재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 정책과 방통위가 맡는 지상파·종편 규제를 통합하면, 유사 서비스에 대한 일관된 규제체계를 마련할 수 있으며, 업무 중복이나 비효율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해서는 규제와 진흥의 분리 또는 통합(합의제와 독임제 형태 간 선택 등), 방통위의 위원 수 등 여러 사안¹²⁾이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동 법률안과 함께 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으며, 동 개정안과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음.

구 분	최민희 의원안	김 현 의원안
입법형식	일부 개정	현행법 폐지 후 제정
주관기구	방송통신위원회, 합의제 (현행과 같음)	시청각미디어위원회, 합의제
위원구성	위원수 9인으로 확대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1, 비상임 6)	5인 상임 (현행과 같음)
주요기능	방송·통신 규제 및 진흥	시청각미디어 규제 및 진흥 (OTT 포함 명시)
심의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행과 같음)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정무직공무원, 인사청문회대상

- 최근 관련 논의를 살펴보면, 2025년 6월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에서 미디어 기구개편 관련해 △미디어콘텐츠부+공영방송위원회(미디어콘텐츠부 산하 행정위원회), △미디어콘텐츠부+공공미디어위원회(독립형 위원회), △확대형 방송통신위원회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12) 나아가 거버넌스 체계의 개편은 향후 전통매체와 신규매체 간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서비스-동일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수평적 규제체계’ 마련 필요성 등의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 2025년 5월과 7월에는 미디어 3학회(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 ‘미디어·ICT 통합 독립제부처(정보미디어부)’와 ‘공영미디어위원회’로 산업영역과 공적영역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거버넌스 개편 논의는 기능분리형 모델(독임제 부처+합의제 기구)과 통합형 합의제 모델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진흥과 규제를 분리할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인 것으로 보임.

- 현재 논의되는 안은 방송과 통신 또는 미디어 등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는 공통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보임.

- 다만,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규제와 진흥 기능을 하나의 기구가 맡아야 한다는 ‘통합론’과 정책집행의 신속성과 규제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두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분리론’이 대립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독립제적 또는 합의제적 요소의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인지의 논쟁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임.¹³⁾

- 일반적으로 독립제는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사무의 통일성·신

13) 이전 조직개편 당시 국회 제출안의 입법취지 및 검토보고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하면, 2008년 방통위 출범 당시에는 방송과 통신의 이원적인 법제와 행정기구로 인한 문제점,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적합한 규제체계의 정립 필요성 등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되었고 기존의 정보통신부가 소관하던 ICT 진흥 등과 관련한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 뿐 아니라 지식경제부, 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 다른 독립제 기관으로 수평이동 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2013년 방통위 개편 당시에는 방송 관련 이슈에 밀려 상대적으로 ICT와 통신 분야에서의 정책성과가 미흡했던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료방송 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등 규제와 진흥의 분리를 우선시했던 것으로 보임.

속성·융통성·기밀성 확보의 장점이 있고, 합의제는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용이하고, 참여를 통한 민주성·투명성·공정성 등의 장점을 기대할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의 추진력과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흥 쪽을 담당하는 독임제 기관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도 있으나, 합의제 기구로 인해 방송·통신 발전이 지연된다는 주장은 다소 과장되었거나 논리적 비일관성을 내포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고, 그러한 정책실패의 원인을 정부 조직형태로 귀결짓는 것은 올바른 진단이 아니라는 지적도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¹⁴⁾

- 생각건대, ‘규제와 진흥’ 또는 ‘공공성과 산업성’의 분리라는 이분법적 틀은 그 모호성으로 인해 명확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지금까지의 역사적 배경 등 현실적인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글로벌 OTT의 영향력 확대와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라는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거버넌스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한편, 개정안은 위원회의 업무와 심의사항만을 변경하고 있는데, 현재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인터넷멀티미디어

14) 현행 방통위는 형식상 합의제 기구지만 위원 수가 비교적 소수로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였다는 점 등 독임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됨.

「방송사업법」 등에서 과기정통부장관의 허가·승인 등의 권한을
규정한 조항 또한 소관 변경에 맞추어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법 제2조¹⁵⁾ 및 제3조제1항¹⁶⁾ 등은 방통위의 설치목적
을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업무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진
흥과 관련된 업무를 방통위 소관으로 하고자 한다면, 관련된 내
용을 추가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 최민회의원 대표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

현 행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최민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9881호)
제29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 총괄 · 조정 · 평가,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 협력 · 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 · 개발 · 생산 · 이용, 국가 정보화 기획 · 정보보호 · 정보문화, <u>방 송 · 통신의 융합 · 진흥 및 전파관리,</u> <u>정보통신산업, 우편 · 우편환 및 우편대</u> <u>체</u>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9조(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 ① <u>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u> ----- ----- ----- ----- <u>인공지능 진</u> <u>흥 및 산업, 통신 · 인공지능의 융합 ·</u> <u>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u> ----- -----.

1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운영원칙)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 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1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동 개정안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방송미디어 산업은 OTT의 확산 등 글로벌 경쟁환경이 심화되면서 당면한 현안 해결과 AI·디지털과의 융합 등 산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¹⁷⁾

17)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

3.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운영방식의 변화 등(안 제4조 등)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6인인 구성으로 확대하는 등 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1인, 상임위원 1인을-----9인의-----.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③ 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신 설>	④ 비상임인 위원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임명 등) ①(생략)	제5조(임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② -----9인-----3인은----- -----6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 -----아닌 교섭단체 또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3인을 포함하여-----.

현 행	개 정 안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서 신설>	③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은----- ----. 다만,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호선하여야 한다.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① -----3인----- -----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6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입법 배경

-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로, 현행법 제4조제1항18)에 따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법 제5조제2항19)에 따라 5인의 상임위원 중 2인은 대통

1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1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명 등)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되 1인은 여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고 2인은 야당의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함.

○ 이러한 임명구조로 인하여 방통위의 위원은 대통령 지명 2인에 여당 교섭단체 추천 1인과 야당 교섭단체 추천 2인으로 구성되어 되어 있음.

○ 다만, 최근 방통위의 경우, 대통령이 지명하였던 2인 이외 다른 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되어 왔음.

- 2023년 3월 30일에 국회에서 최민희 후보자를 추천하였으나, 법제처에서 부적격에 대한 유권해석 중이라는 이유로 임명이 지연되었고,²⁰⁾ 이상인부위원장(대통령)이 2023년 5월에 임명되었는데, 당시 5기 방통위원인 김현위원(더민주), 김효재위원(국힘)과 함께 2023년 8월 23일까지 3인 체제로 운영되었음.

- 이후 2023년 8월 25일에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되어, 이상인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운영되었고, 2023년 12월 1일에 이동관 위원장이 사임하면서 방통위원은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였다가, 2023년 12월 29일에 김홍일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2인 체제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20) 최민희 후보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직” 이력이 「방통위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제4조에 따른 “방송기간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결격사유) 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자

로 운영되었음.

- 이후 2024년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되면서 현재까지 2인 체제로 운영되었다가, 7월 1일 김태규 부위원장의 면직안이 재가되면서 현재 1인체제로 운영 중임.

○ 2인 체제에서 진행한 의결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 등 위법 여지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적 효력을 상실하거나 집행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합의제 취지의 훼손 등 법적·정치적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바 있음.

○ 동 개정안은 2인 체제의 장기화 등 방통위가 현재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원구성, 여야 추천비율 조정 등을 통해 방통위의 조직 구조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현행과 개정안의 변경사항>

구 분	현 행	개정안
위원 구성	5인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그 외 상임위원 3인	9인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6인
여야 추천비율	대통령 추천 2인 국회 추천 3인(여당 1, 야당 2)	대통령 추천 3인 국회 추천 6인(야 3인)
위원장	대통령 지명	대통령 지명
부위원장 등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위원 중 호선 단, 상임위원은 야당 추천 중에서 호선
의사·의결 정족수	의사정족수: 미규정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의사정족수: 6인 이상 의결정족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위원 구성 관련 사항

- 동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의 위원 수는 5인에서 9인으로 확대되며, 위원의 성격을 상임과 비상임으로 이원화하고 있음.
- 위원 수를 9인으로 늘리는 것은 일부 위원의 임기 만료나 사퇴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위원회 기능이 마비되는 파행적 운영을 방지할 수 있어, 합의제 기구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보임.
- 또한 신분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운 비상임위원 6인으로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위촉될 경우 정책 결정과정에서 폭넓은 시각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보임.
- 위원 추천의 경우 현재 대통령 2인, 여당 1인, 야당 2인 추천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지명 3인, 야당이 추천한 3인을 포함한 국회 추천 6인으로 변경하고 있음.
- 이 경우 위원장은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는데, 상임위원은 야당 추천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 개정안은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인에 대해서만 정무직 공무원 및 정부위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이들 3인이 정책 결정 및 집행의 핵심 주체로 기능하게 될 수 있음.
- 이는 비상임위원은 업무 연속성 결여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책임성이 약화되는 등의 단점이 있어, 상임위원 3인이 일상적인 안건 처리와 집행 업무를 주도하고, 9인 전체회의에서는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전 방송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유사한 면이 있음.

- 2000년 방송법 개정 전까지 방송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상임위원으로 나머지는 비상임위원으로 규정하였음.²¹⁾

- 2000년 통합방송법 마련시 방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2인의 상임위원, 5인의 비상임위원 등 9인으로 구성하였음.²²⁾

-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전까지는 총 9인 중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3인의 상임위원을 두고, 나머지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함.²³⁾

21) 「舊 방송법」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제12조 (구성등) ① 위원회는 방송관계전문가 및 학식·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중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제13조 (위원장등)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2) 「舊 방송법」 [법률 제6139호, 2000. 1. 12., 폐지제정]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통령은 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3인은 방송관련 전문성과 시청자대표성을 고려하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③ 국회의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 추천기준과 추천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2인의 상임위원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2인의 상임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관련 사항

- 현행법은 제13조제1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장은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제2항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²³⁾
- 방통위는 재적위원을 현 재적으로 해석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YTN 최다출자자 변경,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 등 주요 안건을 2인 체제에서 심의·의결한 바 있으며,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위원만으로도 주요 안건의 심의·의결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법적·정치적 문제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바 있음.
- 개정안은 의사정족수를 6인 이상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합의제 기구로서의 운영원칙을 정하고, 2인체제에서의 심의·의결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23) 「舊 방송법」 [법률 제6869호, 2003. 5. 10, 일부개정]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통령은 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3인은 방송관련 전문성과 시청자대표성을 고려하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③국회의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 추천기준과 추천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3인의 상임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상임위원중 2인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된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24)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참고로, 방통위의 의사·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2건의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음.

- 먼저 의사정족수 4인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발의, 의안번호 2200461)」이 2024년 6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재의요구에 따른 재의결과 부결(2024.9.26.)된 바 있음.

- 다음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한 내용 등을 포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8485)」를 2025년 1월 의결한 바 있으며,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재의요구에 따른 재의결과 부결(2025.4.17.)된 바 있음.

- 당시 대통령 재의요구서(2025.3.18.)는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상시적인 행정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요 사유였음.

○ 관련된 타 기관의 입법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정부 위원회 중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사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규정을 두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의사정족수 없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은 의사정족수 규정 없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 주요 위원회 등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기관명	법적 근거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방송통신위원회(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제4호의 사항(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10(회의) ③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감사원	「감사원법」 제11조(의장 및 의결) ②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 찬성

기관명	법적 근거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금융 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회의 등) ②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4.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장 및 위 원의 추천·지명은 이 법 시행일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위원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임명된 위 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
며, 시행일에 맞춰 종전 위원 임기가 만료되고, 새롭게 임명된
위원 임기가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이와 함께 시행일
전에 위원장 및 위원 추천·지명 등의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시행일에 맞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려 함.

문 의 처
02)6788-5226